

① 벌칙조항 관련

성매도인 → 형사처벌존속여부 차별화하고자 하는 입장(변박사) - 적극적 호객행위논란(인터넷 게시 행위 포함) 포괄주의로 감.

1) 6월이하 또는 100만원이하. 선택적 변화 ⇒ 사회봉사명령

2) 단서조항 ① 필요적 면제 · 현재의 강제매매
· 과거의 강제매매 자수 → 면제
· 내부비리고발자 → 면제

성매수인 → ① 1년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② “상습으로” 3년이하 또는 5000만원 (1년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보호법 포함(협의??? 양보)

③ 성매수인이 매개체 신고자의 경우 필요적 면책

매개체 처벌조항

벌금형은 26조 5000万

25조 1억원까지 올린다.

상습범규정을 한다.

25조1항 ??의 탈법행위에 방지책을 강구한다.

※노예매춘의 경우

특수감금은 행위가 수반되고 24조 ①항 1호 행위다.

특수감금에 수반되고 행위안 24조 ①항 1호는 ①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련 법률에 조항을 신설 강력히 처벌받기로함,

성매매상습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본수·추징 ① 매개체의 매개체로 인한 일은 몰수추징 잔여금액의 2/1은 가칭 “성매매방지 기금”에 ??한다.

몰수바본 추징한다.

② 위 금원 중 내부비리고발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그중 10/1을 지급한다.

③기금설치조항신설화안은 아음번에 결정지기로함.

※ 기존법 20조에 실효성이 의문이다.

“영업상 관계 있는 ???로 한다. 보다 범위를 넓혀서 landing 비를 주고 유인시키는 경우도 포함해서 개정기로 하고, 전전양도 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해라는 내용으로 개정.

변화순

① 벌칙조항관련 접근

② 선도보호시설 입소조치에 관한 법관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의 근거 마련

③ 기존 선도 보호시설은 20대미만의 미성년자와 시설하되어 있는데 ??로 이를 미성년자 청소년보호시설로 전환(청소년보호법 하에 ??것)하고 성인 시설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하기로 함.

④ 처벌과 보호를 단일법에서 넣기로 하는 의견임

⑤ 법의집행력, 실효성확보방안은?

⑥ 강제매춘(노예매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와 이를 조장·착취하는 행위 및 인신매매의 예방과 방지를 도모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금품을 매개로 타인과 일시적 성관계를 하기 위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2. '강제매춘'이라 함은 제3자로부터 폭력이나 위협, 공갈, 사기에 의해 절박한 위험에 처하여 성매매 혹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유혹, 혹은 강요 받은 행위를 말한다.

'유사한 행위'라 함은 "청소년 정보보호법상의" "유사성교행위 ?? 인용키로함 필요(특강법참조)

장애인복지법상의 = 장애인을 성매매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적용상 유의사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우선 규정관계법률의 범위로 등정키로 함을 법의 말미에 두기로 함.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해규정으로 할 것)